폐기물처리(업)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콘텐츠에서는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기여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폐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하도록 하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면서 산업이 발전하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1
1. 폐기물의 처리 4
1.1. 폐기물의 개념 등 4
1.1.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4
1.2.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5
1.2.1.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5
1.2.2. 생활폐기물의 처리 9
1.2.3.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13
1.2.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4
1.2.5. 건설폐기물의 처리 18
2.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22
2.1.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22
2.1.1. 폐기물처리업이란 22
2.1.2.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23
3.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25
3.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25
3.1.1.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25
3.1.2.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26
3.1.3.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30
3.1.4.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33
3.1.5. 허가의 취소 35
3.2.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37
3.2.1. 권리·의무의 승계 37
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40
4.1.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40
4.1.1.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40
4.1.2.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44
4.2.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46
4.2.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46
5.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50
5.1.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50
5.1.1. 휴·폐업 등의 절차 50
5.1.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51

1. 폐기물의 처리

1.1. 폐기물의 개념 등

1.1.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이란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 폐기물의 성질
>
>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참조).

폐기물의 분류 및 적용배제

폐기물의 분류

▪ 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위 8.의 건설공사는 제외함)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4 제3호).

적용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는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정보·자료-처리·재활용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1.2.1.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 처리기준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

-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이 적용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소지하지 않을 수 있음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준수사항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항).
  - 폐석면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다음의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 √ 액체상태의 폐기물 : 1리터당 2밀리그램
    - √ 액체상태 외의 폐기물 :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함)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제한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4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2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제2조).

▪ 다만,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4항).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1. 다음 표의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함)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12만톤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4항).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만 해당함)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다음의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함)시키려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12만톤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3. 재활용 유형을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함)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함)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폐기물 재활용의 승인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6항).

1.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재활용의 승인 절차는 같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는 같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생활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의 의의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 제3호).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및 지원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

>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대행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3항).

1.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함)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함),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함)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함)
6. 폐의류
7. 동·식물성 잔재물
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함)
9.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3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대행계약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실적 평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제3호), 이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4).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4)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함)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1항).

안전기준의 적용대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구체적 준수사항

▪ 청소차량은 다음에 열거된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1호).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

▪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2호).

▪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에 열거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2.3.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함)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함)

   √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

▪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4항).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함)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2항).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4).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1.2.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의의

▪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위 8.의 건설공사는 제외함)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함)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 ※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란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및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와 같이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4항).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과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사업장폐기물의 공동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8.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9.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함)
10.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기본적 준수사항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제5호(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함)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함]를 하는 경우

나.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3.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4.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에 따른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의무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중간가공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함)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권리·의무의 승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①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 ②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③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 함유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제4항).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5.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7.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구분한 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4항).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1.2.5. 건설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개념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및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및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함]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
17. 혼합건설폐기물(위 1.부터 15.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함)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위 1.부터 5.까지 및 10.부터 13.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함)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위 6.부터 9.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함)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위 14. 및 15.의 건설폐기물을 말함)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함)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됨.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해당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정함)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을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2.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2.1.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2.1.1.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이해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부터 제7호까지).

▹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합니다.

▹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합니다.

▹ "재활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 ※ 재활용 및 회수되는 에너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및 현황

업종구분 및 영업내용

▪ 폐기물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함)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위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 1.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5호).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호).

>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 폐기물처리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시설 현황은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www.kwaste.or.kr)-정보·자료-처리업체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3.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3.1.1.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 한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함)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특례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1.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함)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 2.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함)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함)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3.1.2.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허가신청서의 제출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후단).

▪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폐기물처리업의 조건부 허가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만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 위와 같이 붙여진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7호, 제27조제2항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	매출액의 2%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허가증의 발급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허가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2천만원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7조(「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2(「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함)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위의 6.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 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 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 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 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2에서 정하는 자

8.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위의 1.부터 7.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제6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의제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허가·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가축분뇨처리업 허가에 의한 의제

▪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함) 또는 혐기성 분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에 의한 의제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3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특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1.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함)
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 2.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함)

허가신청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의 금지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2호).

▸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위 1. 또는 2.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함)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1.3.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함)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함.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함)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함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변경허가신청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매출액의 2%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신고사항의 변경

변경신고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함)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8.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의 1. 2. 및 9.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부터 8.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매출액의 2%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별표 6 제12호).

3.1.4.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적합성확인

▪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 5의3 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1호).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함)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2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제3호).

적합성확인 신청서의 제출

▪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함)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2항).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함)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4항).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 충족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제5항).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8호의2),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제2호다목).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

3.1.5. 허가의 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허가의 필요적 취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함)가 취소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의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허가의 임의적 취소 및 영업정지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2.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3.2.1.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에 따른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절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함)을 양수한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등”을 인수한 경우

> ※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수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에서, 추가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함)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등”의 합병·분할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에서, 추가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상속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5호의2·제16호,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1.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2.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	-
과징금	매출액의 2%	-	-

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4.1.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4.1.1.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일반적 준수사항

폐기물의 보관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폐기물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량 및 처리기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준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

▪ 폐기물처리업자(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함)는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선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

▪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 폐기물 처리 계약 시 준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함)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호).

▪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제10호).

허가증 및 명의의 대여금지

허가증·명의대여 금지

▪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8호),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제9호).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장부 등의 기록 및 보존의무

장부의 기록 및 보존

▪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업종	장부	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목 27)).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	매출액의 2%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7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의무

보고서의 제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3항).

4.1.2.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기술관리인의 임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술관리대행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함)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6. 시멘트 소성로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함)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위의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처리시설별 점검항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제49조제2항).

폐기물처리담당자의 교육

교육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초 교육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및 제2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아.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 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교육기관

▪ 교육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 1.의 가.·나.에 해당하는 자와 3.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함)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함)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1.과 2.의 교육대상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 ※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

4.2.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4.2.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검사

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맞게 설치하되,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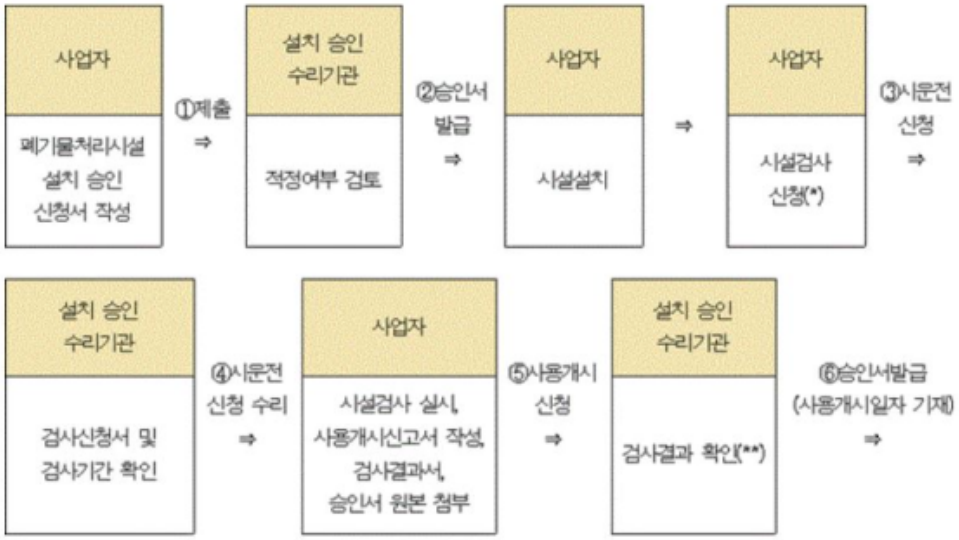
▹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단서).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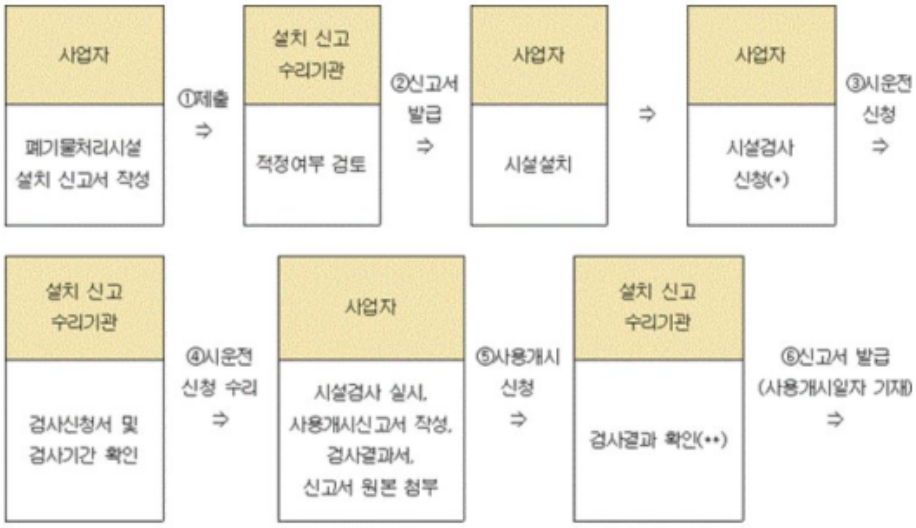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위 1.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Ⅰ. 제3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Ⅰ. 제3호).



처리시설의 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함)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함)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6. 소각열회수시설
7. 열분해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처리시설의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참조)"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 ※ 폐기물매립시설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간(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 내,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 내)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5.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5.1.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5.1.1. 휴·폐업 등의 절차

휴·폐업 등의 신고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 **제출서류**
>
> 1. 휴업·폐업의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2. 재개업의 경우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신고수리 등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2항).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9호).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제61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5.1.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 **제출서류**

1. 사용종료·폐쇄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2. 다음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제외함)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함)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함)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함)

사용종료 및 폐쇄의 절차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사용종료·폐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5항).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사후관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1.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후 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과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을 사용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6항).

※ "정기검사"란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최초의 정기검사)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2회 이후의 정기검사)를 기준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

※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의무 승계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2제1항).

▹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2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정명령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를 해야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해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6개월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제1조)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4호).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의무 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1호).